

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 6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“지방의제21”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“지방의제”추진 주체인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15조제2항)
- “지방의제” 추진 주체인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2항)

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중 “또는 연구기관이”를 “연구기관,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서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940-4452
입안자	환경보호과장	박철순
	환경보전담당	김근희
	담당자	이화연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(생략)	제15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시민,사업자,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,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.	②-----연구기관,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 설 ----- -----
제20조(신미참여등) ①(생략) (<u>신 선</u>)	제20조(시민참여등)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.

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“지방의제21”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“지방의제”추진 주체인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(안 제15조제2항)
- “지방의제”추진 주체인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설치근거 마련(안 제20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지난 '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합의에 의한 『지방의제21』을 갖도록 권고하였으며,

- 지역주민, 민간단체, 기업체,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행동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자 지역사회 운동인 “지방의제21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(금년 50,000천원 편성) 및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